



보도 일시	3.20.(월) 조간 <인터넷방송통신은 3.19(일) 12:00부터>	배포 일시	2023. 3. 17.(금) 15:00
담당 부서	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	책임자	팀 장 전성배 (042-481-7880)
		담당자	사무관 채정균 (042-481-7742)

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된다

-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-

□ 관세청(청장 윤태식)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월 20일(월)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*를 생략한다고 밝혔다.

* 수입자가 특정 용도(예 : 반도체 제조용)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,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

○ 초순수*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, 특정용도(반도체 제조)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(3%)보다 낮은 세율(0%)을 적용받고 있다.

*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,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(유기물 0.01ppm이하) 필수 공업용수

○ 수입업체들은,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,

-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, 관리대장 비치,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*를 부담해야 했다.

* < 근거법령 : 관세법 제108조, 시행령 제132조, 관련고시 제11조 ~ 제19조 >

- ①설치(사용)장소 1월내 반입 의무, ②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, ③통관표지 부착 의무,
- ④용도외 사용(양도, 임대) 등 승인신청 의무, ⑤설치(사용)장소 변경 시 신고 의무,
- ⑥일시반출 신고 의무, ⑦멸실 시 신고 의무, ⑧폐기·수출(일시수출) 시 승인신청 의무,
- ⑨법인 합병 등 발생 시 신고 의무, ⑩종결 시 종결신청

□ 관세청은 이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, 초순수 공급장치를 ‘사후관리 생략’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.

-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“과거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알팔파 (축산 사료용 목초)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는데,
- 이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경우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”이라며,
- “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- 붙임 1 : 관세청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내용**
- 2 : 초순수 공급장치 관련 통계**
- 3 : 사후관리대상물품 및 생략물품 현황 등**



붙임 1

관세청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내용

구 분		내 용
대상물품	품목번호(HSK)	8421.21-9020
	물품명	액체용의 여과기·청정기
	용도	반도체 제조용
개선내용	별표 변경 (별표1가⇒별표1나)	(중전) 용도세율 ○, <u>사후관리</u> ○ (개선) 용도세율 ○, <u>사후관리</u> X
시행일		2023. 3. 20. (월)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

붙임 2

초순수 공급장치 관련 통계

< 단위 : 개, 건, 억원 >

HS	품명	연도	용도세율 적용		
			업체수	건수	수입금액
8421.21-9020	반도체 제조용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	2022	23	204	510
		2021	19	102	317
		2020	22	123	611
		합계	46 (중복제거)	429	1,438

붙임 3

사후관리대상물품 및 생략물품 현황 등

구 분	사후관리 대상	사후관리 '생략'
물품	종자용 옥수수, 엔진부분품, 밧데리충전기 등 269종	나프타제조용 석유, 초산노르말부틸, 반도체 제조용 기체여과기 등 37종
특성	<u>범용성(凡用性)이 있는 물품</u> (다른 용도 사용 가능성 ↑)	<u>전용성(專用性)이 강한 물품</u> (본래 용도에만 사용될 가능성 ↑)
판단	물품 특성, 시장 동향, 과거 이력, 현장 점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	
전환사례 (대상⇒생략)	사료용 알팔파(목초)에 대해 한국사료협회 등 업계 요청이 있어, 물품 특성, 과거 지정 이력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생략('20년)	